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허809 권리범위확인(상)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개인  
변 론 종 결 2016. 5. 13.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6. 1. 5. 2015당484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9. 3./2008. 6. 11./2008. 8. 6./제756167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  
별지와 같다(이하 피고의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상품 : 폴리코사놀(Policosanol)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8.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848)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붉은 색 바탕의 하트 도형, 심장박동의 파형 및 '-LDL', 'HDL+'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

공한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식별력이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리본 형태의 화살표 도

형 ' '과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타원 형태의 화살표 도형 ' '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 이 부분을 분리관찰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화살표 도형이 차지하는 비중 및 색상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사용상품인 폴리코사놀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일부 구성의 식별력 유무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심장을 나타내는 하트 도형 및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파형' 부분과 '-LDL', 'HDL+'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므로 위 구성 부분들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관련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러한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자, 도형, 기호 등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있어서 도형이나 기호 등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자, 도형, 기호 등이 결합된 전체 상표의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판결 참조).

## 3)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  '와 같이 도형, 문자, 기호 및 색채가 결합된 상표이다. 우선 중앙에 심장박동을 의미하는 파형을 포함하고 있는 붉은 색의 하트 도형과 녹색의 리본 형태의 화살표 도형이 색채감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나아가 좌에서 우측방향으로 상승형태의 화살표 도형은 영문자와 플러스(+) 부호가 결합된 'HDL+'을 포함하고 있고, 우에서 좌측으로 하강형태의 화살표 도형은 영문자와 마이너스(-) 부호가 결합된 '-LDL'을 포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살표 도형 내부에 영문자인 'HDL'과 'LDL'이 배치되어 있는데, 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르면 영문자 'HDL'은 'High Density Lipoprotein'의 약어로 고밀도지단백질을 의미하고, 영문자 'LDL'은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어로 저밀도지단백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일부 거래자 사이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의미하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붉은 색의 하트 도형과 녹색의 리본 형태의 화살표 도형,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등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도형, 문자, 기호 등이 결합된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① 화살표 모양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리본 형태로 도형화 되어 있고, ② 화살표 내의 녹색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으로 볼 수 없으며, ③ 화살표 도형 내부에 'HDL+', '-LDL'을 배치하여 구성상의 독창성이 있고, ④ 영문자와 결합된 숫자부호인 '+,-'도 영문자의 앞과 뒤로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으며, ⑤ 녹색의 리본 형태의 화살표 모양이 붉은 색의 하트 도형 내부를 관통하는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⑥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그 구성 부분이 갖는 관념에 의하여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낮추어 심장질환을 막는 심장이 건강한 건강보조식품' 등의 의미가 연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심장을 나타내는 하트 도형 및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파형' 부분과 '-LDL', 'HDL+'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을 그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보아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표장의 유사 여부

###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 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

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 2) 판단

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을 구매할 때 상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전체의 모티브나 지배적인 인상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구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다음과 같이 대비할 수 있다.

나) 먼저, 호칭이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영문자 부분의 사전적 의미나 도형, 문자, 부호 및 색채의 결합 형태를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사용상품인 '폴리코사놀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곧바로 이 사건 등록상표나 확인대상표장 전체로부터 어떤 뚜렷한 호칭이나 관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 표장은 그 호칭이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다) 다음, 외관에 있어서 양 표장은 모두 ① 붉은색 하트 모양과 심장박동을 의미하는 주황색 파형이 결합된 도형과 녹색 화살표가 결합되어 있는 형상이고, ② 문자 부분 'LDL', 'HDL'이 녹색 화살표 안에 배치되었으며, ③ 'HDL'은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LDL'은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그 구성이 유사하다. 이처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 도형 간 결합, 도형 안에 동일한 영문자 배치 등 주요 특징적인 표현 방법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그 지배적인 외관이 유사하다. 다만 양 표장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트 도형 내부를 관통하는 모습으로 순환하는 모양의 녹색 화살표가 결합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하트 도

형을 화살표가 둘러싸고 있고, ⊕ 이 사건 등록상표는 '-LDL', 'HDL+'로 구성된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LDL-', '+HDL'로 구성되어 +, - 부호의 위치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세부적인 것이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남기 어려운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양 표장은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

#### 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폴리코사놀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건강 관련 식품으로 동일·유사한 상품이다.

#### 라. 권리범위 속부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4.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확인대상표장의 구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부 구성의 식별력 유무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① 화살표 모양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순환 형태로 도형화 되어 있고, ② 화살표 내의 녹색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으로 볼 수 없으며, ③ 화살표 도형 내부에 '+HDL', 'LDL-'을 배치하여 구성상의 독창성이 있고, ④ 영문자와 결합된 숫자부호인 '+,-'도 영문자의 앞과 뒤로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으며, ⑤ 녹색의 리본 형태의 화살표 모양이 붉은 색의 하트 도형 외부를 감싸는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⑥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에서 그 구성 부분이 갖는 관념에 의하여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낮추어 심장질환을 막는 심장이 건강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의미가 연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⑦ 설령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LDL-', '+HDL'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위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LDL-', '+HD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도형, 영문자, 수학적 기호 및 색채를 결합한 독창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용상품인 '폴리코사놀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결 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판사	권동주
	판사	김동규

[별지]

###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식용 가공꽃가루, 냉동한 두류, 냉동콩, 냉동된 완두콩, 냉동 죽순, 냉동인삼, 냉동오이, 냉동양파, 냉동생강, 냉동버섯, 냉동배추, 냉동머위, 냉동마늘,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냉동당근, 냉동고사리, 냉동가지, 피클, 피카릴리(Piccalilli),

피넛버터, 포테이토칩(식품), 포테이토스틱, 튀김감자, 통조림토마토, 통조림올리브, 통  
 조림된 채소, 통조림된 과일, 통조림 올리브, 통조림 또는 병조림채소, 통조림 또는 병  
 조림과일, 토마토튀레(Puree), 토마토엑기스, 타이니(Tahini), 크로켓, 크랜베리(Cranber  
 ry) 소스, 코코아버터, 코코넛분말, 코코넛버터, 초콜릿넛버터, 채소튀레, 채소수프용 조  
 제품, 채소수프, 채소샐러드, 채소가공식품, 절임 오이, 잼, 장아찌, 요리용 토마토주스,  
 요리된 채소, 올리브 페이스트, 오가리(건조한 채소), 양념된 피클, 알콜보존처리된 과  
 일, 스투요리된(Stewed) 과일, 소금에 절인 양배추, 소금에 절인 과일, 설탕을 입힌 과  
 일, 설탕에 절인 과일, 생강잼, 사과튀레(Apple puree), 분말아몬드, 보존처리한 호두,  
 보존처리한 포도,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보존처리한 잣, 보존처리한 은  
 행, 보존처리한 살구, 보존처리한 사과, 보존처리한 복숭아, 보존처리한 배, 보존처리한  
 밤, 보존처리한 바나나, 보존처리한 밀감, 보존처리한 모과, 보존처리한 멜론, 보존처리  
 한 레몬, 보존처리한 딸기, 보존처리한 대추,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보  
 존처리된 재배허브, 보존처리된 올리브, 보존처리된 양파, 보존처리된 송로버섯, 보존처  
 리된 버섯(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된 과일(냉동한 과일은 제외), 보존처리된 견과  
 류(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된 견과(냉동한 것은 제외), 발효채소식품(김치), 마멀레  
 이드, 동치미, 대추야자열매, 단무지, 껍질 벗긴 토마토, 깍두기, 김치, 과일칩(식품), 과  
 일칩, 과일젤리,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과일샐러드, 과일껍질, 과일 및 채소샐러드,  
 과육, 과실가공식품, 건포도, 건조무화과, 건조된 코코넛, 건조된 채소(건조채소), 건조  
 된 채소, 건조된 과일믹스, 건조된 과일(건조과일), 건시(곶감), 감자튀김, 감자 프레이  
 크(flake), 가공된 호두, 가공된 인삼, 가공된 올리브튀레, 요리용 채소주스, 두유(우유  
 대용품), 두유, 두부가공식품, 두부, 농(濃)두부, 휴머스(병아리콩 페이스트), 보존처리한

두류, 보존처리된 콩, 보존처리된 완두콩, 보존처리된 식용대두, 보존처리된 렌즈콩,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가공한 땅콩, 냉동한 과일, 냉동한 과실,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인조육, 오리고기, 엽조수(살아있지 않은 것), 양고기, 식육,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꿩고기, 가금(家禽-살아있지 않은 것), 오리알, 식용란(卵), 식용 달걀흰자위, 분말달걀, 메추리알, 동결란, 달걀흰자위, 달걀노른자위, 달걀, 난(卵)가공식품, 건조란, 햄버거용 고기, 햄, 튀긴 고기, 통조림된 고기(통조림육), 조리된 통조림고기, 으갠 소시지, 육포,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식용 젤라틴, 식용 제비등지, 식용 단백질, 식용 골수, 쇠고기조각, 소시지, 소금에 절인 고기, 소 위(胃), 샤르꾸페리(Charcuterie), 비프스테이크, 블랙푸딩(블러드소시지), 브로스(Broth), 부용제조제, 부용(Bouillon), 보존처리된 고기, 베이컨, 레닛(Rennet), 돈가스, 농축브로쓰, 농축부용, 고기젤리, 고기엑기스, 건조된 고기, 간으로 만든 페이스트, 간으로 만든 파테(Pate), 간(肝), 가공한 식육, 가공된 쇠고기, 가공된 고기, 휘핑크림(Whipped cream), 휘핑크림, 하얀 치즈, 팽팽한 치즈, 크림, 쿠미스(우유음료), 콘덴스트밀크, 케피르(우유음료), 치즈가루, 치즈 스프레드, 치즈, 응유(凝乳), 유제품, 유장(乳漿), 유산음료, 유산균음료, 유(乳)가공식품, 우유크림분말, 우유크림,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 우유 단백질, 우유, 요구르트 음료, 요구르트, 연질하얀치즈, 연질치즈, 연유, 양치즈, 양유, 아몬드를 함유한 우유음료, 신선한 미숙성치즈, 식용 카세인, 숙성치즈, 생크림, 산양유, 사와(Sour), 빵조각에 바르는 지방함유품, 분유 (유아용은 제외), 발효유, 몰드숙성치즈, 마시는 요구르트, 땅콩을 함유한 우유음료, 버터크림, 버터, 혼합유, 해바라기유, 팜유, 코코넛 지방, 코코넛유지, 코코넛기름, 채소유지, 참기름, 유지가공식품, 옥수수기름, 쌀겨유, 식용지방제조용 지방질물질, 식용유, 식용 해바라기유, 식용 평지기름, 식용 펙틴(Pecti

n), 식용 팜핵유, 식용 팜유, 식용 콩기름, 식용 코코넛지방팜유, 식용 참기름, 식용 지방, 식용 유채기름, 식용 유지(油脂), 식용 우지(牛脂), 식용 올리브유, 식용 옥수수기름, 식용 어유(魚油), 식용 아마인유, 식용 소맥유, 식용 분말유지, 식용 면실유, 식용 라드(Lard), 식용 라놀린, 식용 땅콩기름, 식용 들기름, 식용 동물기름, 식용 기름, 식용 골유, 식용 고래기름(식용 경지), 식용 경화유(硬化油), 쇼트닝, 동물성 유지, 골유, 마가린, 통조림달팽이, 조리된 달팽이, 식용 번데기, 식용 달팽이알,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황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홍합(살아있지 않은 것), 홍어(살아있지 않은 것), 해삼(살아있지 않은 것), 캐비어, 청어(살아있지 않은 것), 청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참치(살아있지 않은 것), 참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쥐치(살아있지 않은 것), 준치(살아있지 않은 것), 조기(살아있지 않은 것), 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정어리(살아있지 않은 것), 전어(살아있지 않은 것), 전복(살아있지 않은 것), 전갱이(살아있지 않은 것), 자라(살아있지 않은 것), 잉어(살아있지 않은 것), 은어(살아있지 않은 것), 우렁쉥이(살아있지 않은 것), 왕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오징어(살아있지 않은 것), 연어(살아있지 않은 것), 양미리(살아있지 않은 것), 식용 개구리(살아있지 않은 것), 송어(살아있지 않은 것), 소라(살아있지 않은 것), 소금에 절인 연어알, 소금에 절인 생선, 성게알젓, 성게(살아있지 않은 것), 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상어(살아있지 않은 것), 삼치(살아있지 않은 것),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살아있지 않은 생선, 붕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붕어(살아있지 않은 것), 볼락(살아있지 않은 것), 복어(살아있지 않은 것), 보리멸(살아있지 않은 것), 병어(살아있지 않은 것), 뱀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밴댕이(살아있지 않은 것), 방어(살아있지 않은 것), 바지락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미꾸라지(살아있지 않은 것), 문어(살

아있지 않은 것), 명태(살아있지 않은 것), 멸치젓, 멸치(살아있지 않은 것), 말린 청어 알, 돔(살아있지 않은 것), 돌고래(살아있지 않은 것), 도미(살아있지 않은 것), 대합(살아있지 않은 것), 대구알젓, 대구(살아있지 않은 것), 농어(살아있지 않은 것), 녹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넙치(살아있지 않은 것), 낙지(살아있지 않은 것), 꼰치(살아있지 않은 것), 굴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굴(살아있지 않은 것), 광어(살아있지 않은 것), 고래(살아있지 않은 것), 고등어(살아있지 않은 것), 게(살아있지 않은 것),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갈치(살아있지 않은 것), 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가자미(살아있지 않은 것), 가오리(살아있지 않은 것), 가물치(살아있지 않은 것), 해태(가공한 것), 해초가공식품, 파래(가공한 것), 톳(가공한 것), 클로렐라(가공한 것), 청각(가공한 것), 식품용 해조류추출물, 식품용 한천, 식용 알긴산염,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미역(가공한 것), 모자반(가공한 것), 다시마(가공한 것), 구운 김, 가공한 꼬시레기, 가공한 감태, 훈제어패류, 통조림된 생선, 어패류가공식품, 식용 어분(魚粉), 식용 부레풀, 수산물의 통조림 및 병조림, 소금에 절인 생선, 생선을 저민 조각, 생선소시지, 생선묵, 생선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어패류, 보존처리된 생선, 건제어패류,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알로에 분말을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매실추출물 가공식품, 계에서추출한 키토산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산수유를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도정(搗精)한 곡물,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식용 전분, 감자가루, 뮤즐리, 밀가루, 보리가루, 부침용 곡물가루, 빵은 밀, 사고(Sago), 세몰리나(Semolina), 식용 갈분(葛粉), 식용 감자가루, 식용 겉겨를 없앤 귀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밀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사고(Sago), 식용 세몰리나,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율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타피오카가루,

식용 현미가루, 쌀(백미), 쌀가루, 옥수수가루, 으깬 귀리, 으깬 보리, 찹쌀만두제조용  
 가루, 콩가루, 타피오카, 탈곡한 귀리, 탈곡한 보리, 탈곡한 쌀,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  
 (Capers),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건조된 밀글루텐, 건조된 파스타, 건조조리된 밥,  
 곡물로 만든 칩(Chips),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곡물조제  
 품, 곡분제 식품, 곡분제 페이스트, 곡분제품, 교자용 파스타묵음, 국수, 굵게 간 옥수  
 수, 귀리를 주성분으로한 식품, 귀리플레이크, 귀리플레이크, 냉면, 도시락밥, 라면, 라  
 비올리(Ravioli),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마카로니, 만두, 만두피, 면류, 물게  
 탄 옥수수, 밀기울, 버미첼리(Vermicelli-국수), 볶은 옥수수, 빈대떡, 샌드위치, 소면국  
 수, 수프용 파스타, 스파게티, 식용 곡분제 페이스트, 식용 글루텐, 신선한 파스타, 신선  
 한 피자, 쌀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영양파스타,オート밀, 요리되지 않은 당면, 우동,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식용オート밀, 인스턴트 소바국수, 인스턴트 우동, 인스턴트 중국  
 식 국수, 인조미, 전, 조리되지 않은 마카로니, 조리되지 않은 스파게티, 초밥, 카넬로  
 니, 콘플레이크, 쿠스쿠스(Couscous), 키취(Quiches), 타블레(Tabbouleh), 타코(Tacos),  
 토스트, 파스타(Pasta), 패스티(Pasty), 피자, 핫도그, 메주, 효모, 누룩, 베이킹 소다 (요  
 리용 중탄산소다), 베이킹파우더, 비의료용 이스트정제, 식용 이스트엑기스, 식품용 이  
 스트, 이스트엑기스, 이스트파우더, 페이스트용 효소, 식용 맥아, 식용 맥아엑기스, 과  
 자, 빵, 캔디, 감초과자, 강정, 건(乾)과자, 건빵, 고기파이, 과일빙과, 과일젤리과자, 과  
 일케이크, 과자용 가루, 껌, 냉동 요구르트(얼음과자), 누가(Nougat), 눈갈사탕, 다식, 단  
 팔빵, 도넛, 둥근 빵, 드롭스, 디저트용 푸딩, 땅콩과자, 러스크(Rusk), 로젠지과자, 롤리  
 팝, 롤빵, 마시멜로, 마지팬(Marzipan), 마카롱(Macaroons), 막대형 감초과자, 맥아비스  
 킷, 머핀, 모나카용 페이스트리 껌질, 무발효빵, 바바로아, 박하사탕과자, 버터비스킷,

봉봉과자,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껌, 빙과용 셔벗, 빵가루, 사탕과자(캔디), 사탕조림, 산  
 자, 생강빵, 설탕입힌 단단한 캐러멜, 설탕입힌 커피콩, 셔벗, 속이 채워진 초콜릿, 쇼트  
 브레드, 슈크림, 스프링 롤(Spring rolls), 식빵, 식빵용 가루반죽, 식용 과일빙과, 식용  
 빙과용 파우더, 식용 웨이퍼스, 식용 캔디, 쌀푸딩, 아몬드과자, 아몬드케이크, 아이스캔  
 디(얼음사탕),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용  
 파우더, 약과, 양갱, 엿, 와플(Waffles), 웨이퍼스, 인스턴트 도넛믹스, 인스턴트 팬케이  
 크 믹스, 인스턴트 푸딩믹스, 잼빵, 전과, 젤리과자, 참기름으로 만들어진 사탕과자, 초  
 콜릿, 초콜릿바, 초콜릿캔디, 초콜릿페이스트, 카스타드, 카스텔라빵, 캐러멜캔디, 케이  
 크, 케이크반죽, 케이크의 식용장식품, 케이크페이스트, 코코아캔디, 콘칩, 콩이 들어있  
 는 빵, 쿠키, 크래커, 크레이프, 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 과자, 크림빵, 타트(Tarts), 태피  
 (Taffy), 토르티야(Tortillas), 통밀가루빵, 파이, 파테, 팝콘, 패스틸(Pastilles), 팬케이  
 크, 퍼프드라이스, 페이스트리(Pastries), 페티볼(Petit-beurre)비스킷, 페티스포(Petits four  
 s), 편강, 풍당(과자), 푸딩, 프랄린(Pralines), 할바(Halvah), 핫케이크, 햄버거용 빵, 호  
 떡, 식용 당(糖)류, 각설탕, 골덴시럽, 과당(果糖), 굵은 정백당, 꿀, 당밀시럽, 대용꿀,  
 맥아당, 물엿, 백설탕, 봉밀, 분말물엿, 분말엿,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설탕, 식용 당  
 밀, 식용 봉랍(蜂蠟), 식용 포도당, 천연감미료, 떡, 장(醬)류,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화학조미료,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핵산조미료, 마리네이드,  
 마요네즈, 맥아식초, 샐러드드레싱, 샐러드소스, 소스, 식초, 조미료용 소스, 조미용 소  
 스, 케첩, 토마토소스, 프렌치드레싱, 향을 낸 식초, 향신료, 겨자(향신료), 겨자가루, 계  
 피(향신료), 계피가루, 고춧가루, 과일향미료, 과자용 박하, 과자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그레이비(Gravies), 깨소금, 냉이가루, 너츠멕(육두구), 렐리쉬(향신료), 마늘가루, 바닐



라(향신료), 바닐라대용 바닐린, 버섯가루(향신료), 버터용 향미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  
 (향신료), 사프론(Saffron-향신료), 산초가루(향신료), 생강(향신료), 생강가루(향신료),  
 수프용 향미료, 스타아니스 열매(향신료), 식용 심황(향신료), 식탁용 깨소금, 식품용 에  
 센스(정유는 제외), 식품용 향료, 식품향미료용 과일페이스트, 아니스열매(향신료), 아몬  
 드향미료, 양념용 수프, 올스파이스(Allspice), 육계가루,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정향(丁香-향신료), 정향(丁香)가루, 제빵용 양념, 조미료용 잡초, 차용 향미료, 차우차  
 우(향신료), 처트니(Chutneys-향신료), 치즈용 향미료, 카레가루, 카레페이스트, 커피향  
 미료, 케이크용 향미료, 향미료(정유는 제외), 향미료용 바닐라, 후추, 후추가루(향신료),  
 식용 소금, 맛소금, 셀러리(Celery)소금, 식품보존용 소금, 요리용 소금, 요리용 해수,  
 차(茶), 과일차, 구기자차, 녹차, 대용차, 라임차, 맥엽차, 보리차, 비약제용 우려낸 즙,  
 샬비어잎차, 석창포차, 아이스티, 오가피차, 오롱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 잎, 홍차, 커피,  
 코코아, 가공된 커피, 대용커피, 무카페인 커피, 밀크초콜릿, 밀크커피음료, 밀크코  
 코아음료,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우유함유 초코렛음료, 인스턴트 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초콜릿음료, 치커리(커피대용품), 커피대용품용 식물조제품, 커피음료, 코  
 코아스프레드, 코코아음료, 코코아제품,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얼음, 식용  
 얼음, 얼음조각, 음식물용 얼음, 천연 또는 인공얼음, 가정용 식육연화제, 생크림용 안  
 정제, 소시지용 결착제, 식용빙과용 응고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요리용 농화제, 휘핑크림  
 용 안정제, 소맥배아에서 추출한 옥타코사놀(OCTACOSANOL)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  
 식품, 미강(쌀)의 옥타코사놀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식용로열젤리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끝.